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. 5. 10 선고 2022가단537 판결 [임대보증금 반환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 주식회사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5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진주시 C건물 D호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, 위 부동산의 양수인인 피고에 대하여
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(무변론판결)

판사 이재욱